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 -47113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5.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복지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국장	결 재
김인철		황규영	경영미	전결 2025. 12. 29. 윤은미	
협 조					

- 실효성 있는 자활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

2026년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1년)
- ◇ (사업비) 50,000천 원(자활기금)
- ◇ (사업량) 25명(1인당 최대 2백만원)
-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자격취득비 지원
 - 자활성공지원금^{보건복지부} 사업연계 사업효용성 극대화
- ◇ (심의완료) 2026년 자활기금운용계획^{2025.9.22.생활보장위원회}

2026년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추진계획

- ◇ 2026년도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실효성 있는 자활·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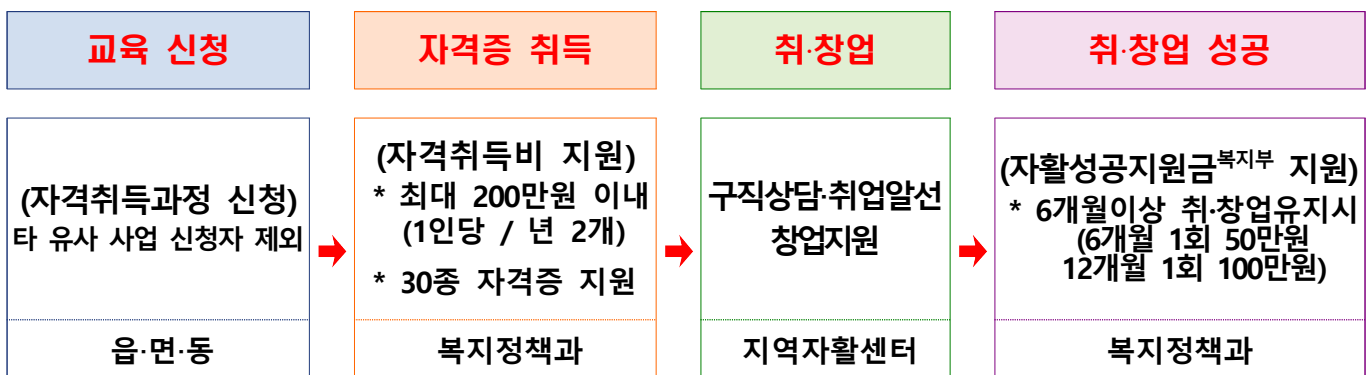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1년)
- (사업비) 50,000천원(자활기금)
- (사업량) 25명(1인 최대2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자격취득비 지원
 - 자활사업단 참여주민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하여, 자활성공지원금^{보건복지부} 사업연계 탈수급지원

II 추진근거

-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제8호
- (조례) 천안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제3조(사업범위) 제7호, 제5조(지원대상) 제1호
- (계획) 2026년도 천안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 저소득층 자격 취득비 지원

III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타 유사 “자격취득지원사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수당” 등 중복지원 제외

2 자격취득비 지원

-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 수수료(이수)후 자격취득 시 지원
-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붙임 1**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붙임 1** 교육수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
- **(지원자격증 목록)**

· 요양보호사	· 보육교사	· 조리사	· 공인중개사	· 건설안전기사
· 사회복지사	· 바리스타	· 실내건축기능사	· 제과 · 제빵기능사	· 건축 · 토목기사
· 손해사정사	· 운전면허	·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산림기사
· 타일기능사	· 네일아트	· 도배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기기능사
· 간호조무사	· 애견미용	· 이미용사	· 컴퓨터 · 전산자격	· 조경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 직업상담사	· 주택관리사	· 중장비면허 (지게차, 굴착기 등)	· 용접기능사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명)

연도	예산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1,124,280	454	373,668	
2019년 이전	414,280	192	144,162	
2020	200,000	60	48,658	
2021	120,000	46	39,110	
2022	110,000	62	48,452	
2023	110,000	34	27,424	
2024	110,000	37	43,401	
2025	60,000	23	22,461	

3 자활성공지원금^{보건복지부사업} 연계추진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주민들에게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 자활성공지원금^{국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기여

○ (지급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 수급한 경우

○ (지급수준)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만족 시 지급

《보건복지부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대 상) 자활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탈수급한 경우 지급
- (지 급 액) 탈수급(생계급여) 후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 (사업개시) 2025. 11월부터(지침 시행 완료 복지정책과-39138(2025.10.27.)호 관련)

○ (행정사항) 2026년도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지침 변동 시 별도 시행 예정

IV 행정사항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12. 30일 限
 - 천안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게이트웨이 교육 시 사업 안내
 -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 상담·교육 시 대상자에 대한 홍보
 - 읍면동 자활상담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안내요청

붙임 1 신청서식(위임장 포함)

붙임 2 사업 안내문

붙임 3 2026년도 자활기금 지출계획

붙임 4 관련 법령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H.P)	
	주 소	천안시	구	
보 장 유 형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신청 자격증				
자 활 계 획 (자격증활용)	☐ ☐ ☐			
교 육 기 관		연락처		교육개시 예정일자
위와 같이 자활기금 활용 자격취득과정 교육 참가를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활기금 지원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확인(수급자, 차상위계층)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자활기금 사업 유효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격취득과정 교육비 지급신청서 (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5-12-29 16:10:50)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H.P)			
	주 소	천안시 구			
보 장 유 형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취득(예정) 자 격 증				교육기관	
				자격취득 (수료)일	
자활(취·창업) 계 획	☐ ☐ ☐			중복지원신청 여부 (※ 타 교육비지원제도 등)	
				☐ 여 ☐ 부	
지 급 금 액	금()원				
지 급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관 계	
위와 같이 자활기금 활용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활기금 지원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확인(수급자, 차상위계층)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자활기금 사업 유효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수강료납부영수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위 임 장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상기 본인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 가족 / ☐ 교육기관
(성명:)의 (계좌번호) 계좌로 입금을
위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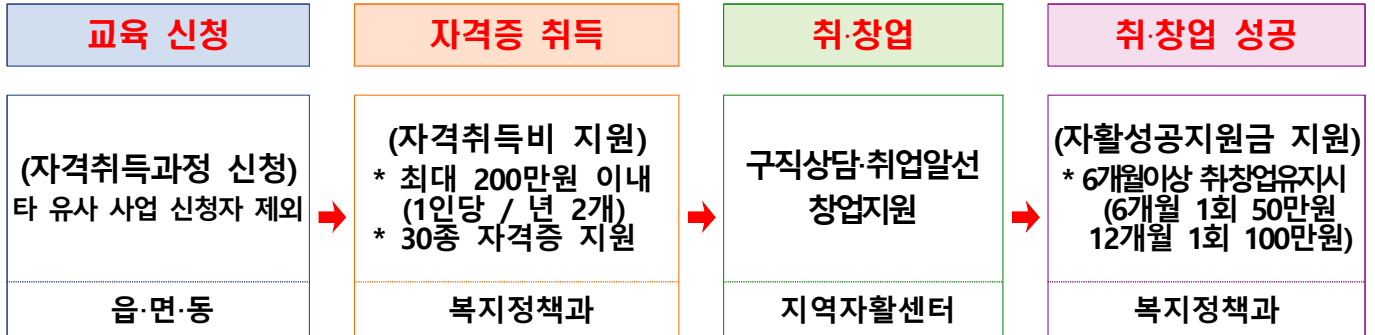
20 . .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2025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 사업 안내문

① 사업추진방향



※ 타 유사 “자격취득지원사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수당” 등 중복지원 제외

② 자격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격종류)

· 요양보호사	· 보육교사	· 조리사	· 공인중개사	· 건설안전기사
· 사회복지사	· 바리스타	· 실내건축기능사	· 제과제빵기능사	· 건축·토목기사
· 손해사정사	· 운전면허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산림기사
· 타일기능사	· 네일아트	· 도배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기기능사
· 간호조무사	· 애견미용	· 이미용사	· 컴퓨터·전산자격	· 조경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 직업상담사	· 주택관리사	· 중장비면허 (지게차, 굴착기 등)	· 용접기능사

- (구비서류)
 - (취득전) 교육참가 신청서
 - (취득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
- ※ 자격취득 시 교육비 지원(26년도 변경사항)

③ 자활성공지원금 연계 국비사업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 수급한 경우
- (지급수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만족 시 지급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3

2026년도 자활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정책과	480,334	533,073	△52,739
기초생활보장	480,334	533,073	△52,739
사회안전망구축(복지정책과)	200,000	320,000	0
자활기금운용(복지서비스팀)(자활기금)	200,000	320,000	0
자활사업지원	200,000	320,000	0
301 일반보전금	50,000	60,000	△1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0	60,000	△10,000
○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 2,000,000원*25명 = 50,000,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50,000	150,000	△1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150,000	△100,000
○ 지역자활센터 물품 구입 및 기능보강 50,000,000원*1식 = 50,000,000원			
501 융자금	100,000	100,000	0
01 민간융자금	100,000	100,000	0
○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자금대여 50,000,000원*2개소 = 100,000,000원			
재무활동(복지정책과)	280,334	213,073	67,261
보전지출(자활기금)	280,334	213,073	67,261
보전지출(자활기금)	280,334	213,073	67,261
602 예치금	280,334	213,073	67,261
01 일반예치금	280,334	213,073	67,261
○ 기금 예치금 280,334,000원*1식 = 280,334,000원			
지 출 합 계	480,334	533,073	△52,739

붙임4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기업·자활사업단·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